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와 같다.
1. ~8. (생 략)	1. ~8. (현행과 같음)
9. W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9. W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u>특정금전신탁</u>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S클래스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
	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
	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
	<u>자 하는 투자자</u>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
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10. (생 략)	1. ~10. (현행과 같음)
<신 설>	<u>11. S클래스 수익중권</u>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환매조건부 매도	7. 환매조건부 매도 <u>또는 매수</u>
8.~10. (생략)	8.~10. (현행과 같음)

제40조(보수)

제40조(보수)

- ①·②(생 략)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0. (생략)

<신 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0. (현행과 같음)

11. S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제41조(판매수수료)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1조(판매수수료)

0.17

- ① ② (현행과 같음)
- 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수 있다. 다만,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이 의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 매금액(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 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 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 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 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S클래스 수익증권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u>부 칙</u>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